

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- 이언구 부위원장입니다.
- 정회시 협의 조정된

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.

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제7조(도로명주소의 교육)중

②항에 이어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③ 방문교사라 함은 학교에서 도로명 주소의 교육을 하는자를 말한다.”

○ 제8조 ①항 1호의 내용중

1. (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. 이하같다)를 삭제한다

[별지 제1호서식]

제목란의 “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 신청서”를

제목란의 “도로구간 및 도로명 협의 신청서”로 한다.

-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